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5. 28.

발의자 : 김도읍 · 김태흠 · 정갑윤
이완영 · 김진태 · 추경호
주호영 · 김기선 · 정점식
최교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소음대책지역인 제1종·제2종 구역과 제3종 구역의 일부에 있는 토지(이하 “매수대상토지”라 함)의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, 매수청구를 받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매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 「농지법」 제6조에 따라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토지수용·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므로,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음.

이에 매수대상토지가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공항소음 피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2항·제

4항 신설 등).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”을 “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대상토지가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인 경우 그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매수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은 제13조(제4항은 제외한다) 및 제1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”는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본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토지 매수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토지매수의 청구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<p>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토지매수의 청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대상토지가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인 경우 그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-----.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매수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은 제13조(제4항은 제외한다) 및 제1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”는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본다.</p>
<p><u><신 설></u></p>	